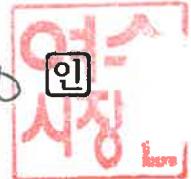


제223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0 월 27 일

여 수 시 장

2022.10.27



여수시 조례 제1768호

붙임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주변경관 및 환경 등을 고려하여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항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 자원순환관련시설 중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제외한다)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 및 제25호 발전시설 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7에 따른 고형연료 제품을 사용하는 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기준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 도로 및 철도, 하천, 저수지 부지경계에서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나. 주거밀집지역(10호 이상의 실제 주민이 거주하는 인가가 밀집된 지역을 말하며, 주택과 주택사이의 직선거리가 50미터 이내로 연결되는 호수를 합산) 주택 부지 경계에서 직선거리 2,0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10호 미만 주거밀집지역은 주택부지 경계에서 직선거리 1,0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단,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의 90% 이상 동의를 얻은 경우 허용할 수 있다.

제12조의3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의2제4호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조례 시행 이전 각종 인·허가와 심의 진행 등 행정절차를 **진행**한 경우에는 종전 조례에 따른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의2(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 가목(3)에 따른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3. (생략)</p> <p><u>&lt;신설&gt;</u></p>	<p>제12조의2(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 -- -----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u>4. 주변경관 및 환경 등을 고려하여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항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 자원순환관련시설 중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제외한다)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 및 제25호 발전시설 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7에 따른 고형연료 제품을 사용하는 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기준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u></p>

가. 도로 및 철도, 하천, 저수지 부지 경계에서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나. 주거밀집지역(10호 이상의 실제 주민이 거주하는 인구가 밀집된 지역을 말하며, 주택과 주택사이의 직선거리가 50미터 이내로 연결되는 호수를 합산) 주택 부지 경계에서 직선거리 2,0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10호 미만 주거밀집지역은 주택부지 경계에서 직선거리 1,0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단,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의 90% 이상 동의를 얻은 경우 허용할 수 있다.

제12조의3(개발행위허가기준 적용 예외 등) ① · ② (생략)

제12조의3(개발행위허가기준 적용 예외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 <신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의2제4호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